



제429회국회(정기회)
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전통시장 등의 빈 점포 활용에 대한 융자 지원 등〉

■ 박용갑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1204호)

2025. 9.
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
전문위원 성 소 미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1. 전통시장 등의 빈 점포 활용에 대한 융자 지원 등	2

I. 제안경위

1. 발 의 자 : 박용갑의원 등 12인
2. 발의연월일 : 2025. 7. 2.
3. 회부연월일 : 2025. 7. 3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에 있는 빈 점포 2만 2,681개에 대한 활용을 촉진하고자 빈 점포의 활용 촉진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, 그 목적을 일부 목적으로 제한하여 기존 상인 등이 신규 점포를 내려고 할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려움.

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빈 점포 활용 시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상인들은 그 외에 저금리 용자와 이차 보전 등 지원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.

이에 창업자, 상인, 상인회 등이 빈 점포에 판매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및 용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빈 점포 활용과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7조).

Ⅲ. 검토의견

1. 전통시장 등의 빈 점포 활용에 대한 용자 지원 등

개정안은 전통시장 등에 있는 빈 점포를 창업자, 전통시장 등의 상인이나 상인회 등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. 그리고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·용자(이차 보전 포함)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(안 제17조).

현행	개정안
제17조(빈 점포의 활용 촉진)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있는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,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 1.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, 행사 또는 민원상담 등을 위한 장소 2. 고객안내시설,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2의2. 고객 및 상인을 위한 수유·탁아 시설의 설치 장소 2의3.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고객을 위한 문화·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 3.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 4.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	제17조(빈 점포의 활용 촉진) ①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2의2. (현행과 같음) 2의3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4. (현행과 같음)

5. 제25조에 따른 상거래현대화의
시범점포 육성을 위한 장소

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호의3에 따른 문화·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고객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현행법 제17조는 전통시장 등에 있는 빈 점포를 활용할 수 있는 주체를 비영리법인,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 정하면서 고객안내시설, 청년상인을 위한 창업보육장소, 지역특산품 직영매장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(제17조제1항),

빈 점포 활용 시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(제17조제2항), 전통시장 등의 빈 점포 활용 목적에 대하여 비영리성 또는 공공성을 고려하는 측면이 있음.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‘2023년 전통시장·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’에 따르면, 2023년 기준 전국 전통시장의 총 점포 수는 226,995개로 이 중 10.1%(22,846개)가 ‘빈 점포’로 나타났으며, 전통시장의 빈 점포 수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.¹⁾

전통시장 점포 현황

구분	2021년		2022년		2023년	
전체 점포	241,080개	100.0%	232,206개	100.0%	226,995개	100.0%
영업 점포	181,574개	75.3%	174,854개	75.3%	171,529개	75.6%
빈 점포	22,663개	9.4%	22,681개	9.8%	22,846개	10.1%
기타 점포	4,407개	1.8%	4,504개	1.9%	4,539개	2.0%
노점	32,436개	13.5%	30,167개	13.0%	28,081개	12.4%

출처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1)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, “2023년 전통시장·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”, 2024.12.

이에 개정안은 창업예정자, 상인, 상인회 등이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까지 빈 점포의 활용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면서 전통시장 등의 빈 점포를 판매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융자하거나 이차 보전(利差補填)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빈 점포 활용을 촉진하고 상권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.

다만, 빈 점포의 활용 지원 대상과 관련하여, 현행 규정은 빈 점포의 활용 용도에 있어 비영리성 및 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, 개정안은 전통시장 등에서 창업하려는 자와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여 빈 점포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인바, 빈 점포 활용의 공공성과 빈 점포 증가 추세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.

또한, 빈 점포의 활용 지원 방식과 관련하여, 현행 규정은 시설 수리와 임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, 개정안은 융자 또는 이차 보전의 지원 방식을 추가하고 있는바, 공적 재원을 기반으로 시중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자금 확보를 지원²⁾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내 빈 점포 증가 추세의 심각성으로 인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, 영리

2) 법제처, 「법령 입안·심사 기준」, 2023.12., pp.272-273

목적의 판매시설에 대한 지원 방식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
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해 보임.

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내 빈 점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
상인 및 예비상인의 판매시설에 대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데에는
동의한다는 입장이나,

지원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전통시장 등의 상인은 현재도 소상공인
정책자금으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법 개정의 실익이 없고, 지원
방식이 보조와 융자로 한정될 수 있어 상인이 받을 혜택이 감소할 우
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.

문 의 처
02)6788-5465